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정 2009.01.01.
개정 2009.08.28.
개정 2016.06.30.
개정 2017.12.05.
개정 2018.06.12.
개정 2021.03.11.
개정 2022.02.01.
개정 2023.12.06.
개정 2024.07.09.
전면개정 2025.08.1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아주대학교(이하 "모교")의 교육 이념을 구현·발전시키고, 공학대학원 원우 간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학술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내에 설치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회원 간 친목 활동 및 상부상조

- ② 연구 발표, 학술 강연, 공장 견학 및 진단 연구 등
- ③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및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공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언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 2 정회원은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의결·집행 기구

제7조(기구)

본회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대의원회
- 2 임원회
- 3 학과별 학생회

제8조(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는 임원(회장, 부회장, 기획이사, 총무이사, 감사, 고문)과 각 학과 학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과대표 및 총무)으로 구성한다.

제9조(대의원회 소집 및 의결)

- 1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 4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 5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6 회장은 필요 시 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온라인 회의·투표의 효력은 대면 회의·투표와 동일하다.

제10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임원의 선출
- ② 회칙 개정의 심의·의결
- ③ 사업계획의 심의·승인
- ④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 ⑤ 그 밖에 대의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주요 사항

제11조(대의원회 운영)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기획이사, 총무이사, 감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13조(임원회 소집)

정기 임원회는 임원 간 협의로 정한 일시·장소에 개최한다. 필요 시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임원회의 직무)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확정과 예산안 작성
- ② 회칙 및 각종 규정(안) 기안
- ③ 대의원회 의결사항 집행
- ④ 예비비 사용(전용) 의결
- ⑤ 긴급사항의 결의 및 집행

제15조(학과별 학생회)

- 1 학과별 학생회는 해당 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되며, 독자적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 2 학과별 학생회는 본 회칙을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자체 회칙 또는 관례에 따른다.
- 3 학과별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6조(임원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필요 시 임원 구성 변경은 대의원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기획이사 1인
- 4 총무이사 1인
- 5 감사 1인
- 6 고문 1인

제17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또한 차기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다. 다만 회장이 해당(차기)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를 부회장에게 위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기획이사는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행사 및 사업을 기획·집행한다.
- 4 총무이사는 재정을 관리·집행하며, 임기 종료 전까지 재정 집행내역서와 결산자료를 작성·공지한다.
- 5 감사는 본 회의 재무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 (임원 및 각 학과 대표·총무)에 보고한다.
- 6 고문은 공학대학원과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고 임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회의 연속성과 발전에 기여한다.
- 7 회장은 교학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매년 상반기 공학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학대학원장 및 교학팀장에게 제출한다.

제5장 임기 및 선거

제18조(임기)

- 1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학기제로 한다.
- 2 선출직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선거 일반)

- 1 임원 선거의 선거권은 대의원회(임원, 각 학과 과대표·총무)에 있다.
- 2 모든 선거는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유효투표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20조(직위별 선출 및 자격)

- 1 회장: 임원 또는 과대표·총무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총무이사·기획이사: 본회 정회원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으며, 각 직위별로 별도 선거를 실시한다.

- 3 감사: 대의원 또는 사회단체 임원 등 유경험자를 우대하여 선거로 선출한다.
- 4 고문: 임원 역임자를 우대하여 선거로 선출한다. 고문이 유고 시에는 직전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입후보 및 구성의 형평성)

- 1 입후보자는 선거일 2주 전까지 회장 및 선거관리 위원에게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임원 정원(6명)을 초과하는 경우, 학과 간 형평을 위하여 동일 학과 임원이 과반(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 3 현 회장과 동일 학과의 회장 후보는 타 학과 지원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로 하며, 타 학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대의원회는 각각 5월과 11월에 선거일을 확정·공지하며, 현 회장의 권한으로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3조(재정)

본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원우회비
- ② 찬조회비(기부금·보조금 등)

제24조(원우회비)

- 1 원우회비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정하며,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징수한다.
- 2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총무에게 전자적 방법(온라인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무는 납부 사실을 감사 및 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 3 대의원회 (임원 및 각 학과 대의원)은 원우회비 납부 의무의 예외가 아니다.

제25조(찬조회비)

- 1 회원 및 유지회원으로부터 찬조금 또는 보조금을 기부 받을 수 있다.
- 2 졸업생이 워크숍에 참여할 경우, 참여 시점이 졸업 후 1학기 이내인 경우에는 원우회비의 50%, 2학기 이내인 경우에는 100%를 찬조회비로 납부한다. 단 임원회의의 결로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 3 찬조회비는 전자적 방법(온라인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총무는 납부 사실을 감사 및 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재정집행내역서에 기록한다.

제26조(예산·결산)

- 1 예산은 학기 초 대의원회에서 사업별·항목별로 심의·조정한 후 필요 시 공학대학원장 또는 교학팀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2 예산 항목은 행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운영비, 대외활동비로 구분한다. 필요 시 임원회 협의를 거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가) 행사비: 입학식, 졸업식, 워크숍 등 행사 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
 - 나) 업무추진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행사 추진을 위한 간접 활동 경비
 - 다) 회의비: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회의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 라) 운영비: 원우 간 정기적·일상적 소통활동 및 간담회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 마) 대외활동비: 원우 복지 및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학팀 및 교수진 등과의 교류 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 3 본회의 예산은 임원회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 4 결산은 임기 종료 전까지 재정집행내역서를 포함한 결산자료를 공지하고, 감사 실시 후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학기(3월 1일~8월 31일)와 2학기(9월 1일~익년 2월 28일)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28조(개정 발의)

회칙 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29조(개정 의결·공포)

- 1 회칙 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개정안이 의결되면 회장은 즉시 공포한다. 공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8장 상벌

제30조(징계 사유 및 관할)

- 1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2 임원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직위를 박탈하거나 차기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 3 임원의 직위가 중도에 박탈될 경우, 해당 임원은 봉사장학금을 즉시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 4 징계 사유, 의결 결과, 효력 발생일 등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31조(상벌 규정)

상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며, 그 제정·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준용 및 해석

제32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대학 규정 및 통상 관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다음 각 일자의 제·개정 사항을 통합 반영한다

- 제정: 2009.01.01.
- 개정: 2009.08.28., 2016.06.30., 2017.12.05., 2018.06.12., 2021.03.11., 2022.02.01., 2023.12.06., 2024.07.09.
- 전면개정: 2025.08.19.